

부산직할시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이의신청) 제2항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를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로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제1항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를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로 한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 제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황	개 정 안
<p>제5조(이의 신청)</p> <p>①(생 략)</p> <p>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5조(이의 신청)</p> <p>①(현행과 같음)</p> <p>②_____</p> <p>_____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p> <p>②③④(생 략)</p>	<p>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p> <p>②③④(현행과 같음)</p>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황	개 정 안
<p>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p> <p>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p> <p>②(생 략)</p>	<p>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_____</p> <p>_____ 위원회의 _____</p> <p>_____ 위원회에 _____</p> <p>_____</p> <p>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위원회는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②(현행과 같음)</p>